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황 규 철 의원 등 8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8월 25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
나.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전담부서의 설치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, 안 제5조)

라.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, 운행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안 제8조)

바.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, 안 제10조)

사.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, 운영 및 기능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(안 제11조, 안 제12조)

아.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3조, 안 제14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조례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,
 - 16개 시도·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중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 - 상위법령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,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및 운영,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, 기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 -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강제력은 없으나 필요시 전담부서의 설치와

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6조는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7조 및 제8조는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, 시·군과 협의 저상버스 운행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입법예고('21. 8.18. ~ '21. 8.23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○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수용” 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하여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지원 및 운영,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그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